

LG전자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LG전자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회사의 기업가치를 보호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모든 국내외 조직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자문역, 기타 근로자 포함하며, 이하 “임직원”)과 협력업체 및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제3자 대리인 등 당사와의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며, 거래와 관련하여 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및 규정의 체계)

1.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대한민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직자윤리법
- 기타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관련 법령 등

2.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해외 주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비롯하여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현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외 주요 관련 법령 및 협약]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 OECD 부패방지협약
- UN 부패방지협약 등

3. 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하위 규칙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본 규정은 하위 규칙 및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임직원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및 이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말한다.

-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 공직 후보자(공직에 출마한 후보자)
- 공직을 수행하는 정당의 당원
- 공적 국제기구 또는 공공 국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예: IMF, UN, 세계은행, WTO 등)
-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임직원)
- 정부의 공식 에이전트 또는 컨설턴트
- 기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지위에서 공적인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한국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두 포함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대리인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판촉, 시연이나 설명, 계약의 체결을 위해 또는 그 이행을 지원하거나 기타 대정부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에이전트, 컨설턴트, 전문 자문가(법률, 노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전문가 등)를 의미한다.

3. 제3자

대리인을 비롯하여 당사의 고객, 합작회사, 외주 공급자, 계약자, 투자자 등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나 이해 관계를 가지는 모든 외부 단체나 개인을 통틀어 일컫는다.

4. 금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및 향응
- 교통, 숙박, 여행 등 편의 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5. 선물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을 의미하며,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물품을 포함한다.

6. 접대

식사, 음주, 스포츠, 기타 여가 및 문화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또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7. 급행료

대개 금품의 지불 없이도 합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불법 또는 비공식적 금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취업 허가, 통관과 같은 일상적인 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성과를 보장받거나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금품을 포함한다.

8. 부정한 사업상 이익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이익이란 다음 어느 하나를 확보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포함한다.

- 계약의 취득 또는 유지
- 입찰, 영업기회 또는 경쟁사 영업 활동에 대한 기밀 정보
- 인·허가 승인
- 관세, 세금, 벌금 부과액의 감면 또는 면제
- 행정 또는 민사 소송에서의 유리한 처분 등

9. 이해충돌

회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즈니스, 재무, 가족,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인의 판단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현지 각국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 2 장 금지 및 예외사항

제 5 조 (원칙적 금지)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되며,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 제안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 6 조 (선물 및 접대)

1. 임직원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과 접대를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이해충돌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법령에 의해 금지된 선물 및 접대
- 가액이 현저히 높은 호화·사치성 선물 및 접대
- 동일한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 공개될 경우 난처할 수 있는 선물 및 접대 등

2. 회사는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뇌물로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물 및 접대 사실을 뇌물이 목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3. 허용 가능한 선물 및 접대

- 현지 법령 및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액이거나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호화롭고 사치스럽거나 관련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수준이 아닌 경우
-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부정한 대가라는 오해를 사지 않는 경우

4. 모든 선물과 접대의 제공은 청구서, 영수증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계서류에 정확하게 기록 및 반영되어야 한다.

제 7 조 (여행 및 출장)

1.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다음과 같은 여행 및 출장을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 여행 경비의 현금 제공
- 여행과 관련하여 일당 제공
- 출장 목적과 무관한 여행·여행 경비 제공
- 호화 사치성 여행 제공

2. 허용 가능한 여행 및 출장

- 여행 및 출장의 제공이 합법적이고 사업 목적,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등과 같이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필요한 것인 경우
- 교통비, 숙박, 식사, 통신비 등 여행(출장) 경비는 서비스 제공자(호텔, 여행사 등)인 거래처에 직접 지급

3. 모든 여행 경비의 제공은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수단에 의해 증빙되어야 하고, 회계서류에 정확하게 기록 및 반영되어야 한다.

제 8 조 (급행료)

급행료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일반적인 정부의 업무에 대해 그 수행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물로 간주하므로 회사는 급행료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 9 조 (기부금)

1. 회사는 선의에 의한 자선단체에 대한 적법한 기부, 후원 및 협찬은 허용되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대가성 기부금”은 엄격히 금지한다.
2. 회사의 자산을 사용한 불법적인 “정치적 기부”는 엄격히 금지한다.
3. 기부금 제공에 관련된 모든 문서는 회계서류에 정확하게 기록 및 반영되어야 한다.

제 10 조 (이익충돌 등)

1. '이익충돌'은 임직원이 업무 중 개인적인 이익을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시하고, 이러한 개인적인 이익이 해당 임직원의 경영 판단, 의사 결정 등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임직원이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지분 소유
 - 임직원이 거래상대방의 이사 등 주요임원으로 활동하거나 주요임원과 친인척 관계
 - 그 밖에 임직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 기타 부당한 영향이 우려되는 모든 경우
2. 임직원은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익충돌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인사부서 또는 준법사무국에 신고 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허가,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공무수탁사인 등과의 혈연, 학연 기타 특수관계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제 3장 교육 및 점검

제 11 조 (교육)

1. 회사는 임직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부패방지 인식과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다룰 수 있다.
 - 회사의 뇌물 및 부패방지 관련 방침, 절차 및 관련 법령
 - 회사와 임직원이 직면한 부패 리스크 및 부패로 인하여 초래되는 피해
 -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 청탁 또는 뇌물 제공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법
 - 모든 우려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방법과 대상 등
2. 임직원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부패방지 교육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교육은 회사가 정한 방침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되 교육 대상자 및 그들의 역할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법령 및 본 규정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
4. 교육의 절차와 내용, 교육대상자 등에 대한 사항은 문서화된 정보로 보유해야 한다.

제 12 조 (조사 및 모니터링)

회사는 다음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행해야 한다..

1. 신고, 적발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부패에 대해, 또는 부패방지 규정 등에 대한 위반에 대해 회사는 조사해야 한다.
2. 회사는 회사의 임직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또는 조사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상기 모니터링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반행위 신고 및 조치

제 13 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1. 회사의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본 규정의 위반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신문고에 신고하여 알려야 한다.
2. 부서의 장이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제보자에게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회사의 임직원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는 해당 임직원에게 어떠한 지원(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면책 및 벌금 보전 포함)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

- 본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제 2 조 (해석)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준법사무국의 해석에 따른다.